

# 한국어문화연구센터 규정

시행: 2022. 03. 01.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처 부설 한국어문화연구센터(Research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제3조(설립목적) 본 센터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주요 이론을 확립하고 이를 적용·발전시켜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 수준 향상에 힘써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
2. 관련 교재 및 학술 저서 출판
3. 연구과제 용역 수행
4. 연구자 교육 및 양성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 개최
5. 국·내외 학술대회 개최
6.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
7. 국·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
8.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기구) 본 센터는 연구 활동과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자문위원회
3. 연구기획부
4. 학술교류부
5. 출판편집부
6. 교육연수부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
2. 상임연구원의 추천 및 심의
3. 예산 및 결산
4. 센터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각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- ③ 센터장, 각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
-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명한다.
-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 센터의 연구, 학술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센터장 및 소속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부장) ①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의 분담된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부장은 본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연구원) 본 센터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 그리고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연구보조원) 본 센터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본교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행정요원) 본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재정)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
3. 기타수입

제13조(회계) ①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본교 교비 예산에 포함·편성하고,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4조(보칙) ① 「대학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제 규정에 따른다.

② 본 센터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본 센터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